



統民黨 改憲案中

軍人の 政治介入禁止規定 등 新設에 대한 檢討

87. 7

1. 統民黨 改憲案中 關聯規定

○ 통민당이 발표한 개헌안에는

- 전문부분에 “ . . . 군인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문민정치의 이념을 천명함으로써 . . . ” 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
- 제5조 제2항에 “ 국군은 . . .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에 개입 하여서는 아니된다 ” 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

2. 檢討

○ 현역군인의 정치적 중립내지 정치개입금지는 현행헌법상 이미 규정되어 있음

- 현행헌법에 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(제4조 제2항) ” 는 규정과 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(제6조 제2항) ” 라는 규정을 두어 국군의 임무와 역할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국한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도 명백히 밝히고 있음
- 따라서 통민당안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2중규정으로서 법체계상 맞지 않음

○ 또한 통민당 개헌안중 “ 文民政治 ” 라는 것이 현역군인의 정치 개입 금지를 의미한다면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한 것으로 이미 헌법에 규정이 있고 퇴역군인까지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의미라면 이는 부당한 참정권 제한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임

- 군에서 제대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"국민"으로서 모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마땅하고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토방위임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병역기피자만 정치를 하라는 것으로 심히 부당함
 - "文民"이라는 개념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들에게만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평등권 규정을 정면 부정하는 발상임
 -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 병역을 기피하거나 교묘하게 회피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야 할지언정 이러한 병역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유로 정치활동상의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함
 - 가사 정치활동 제한은 "직업군인에 한정한다"는 주장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직업군인의 개념이 불확실함은 물론이며 과거의 직업에 따라 정치적 차별을 하려는 발상 그 자체가 명백히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임
- 정치인이 정치권력을 담당하느냐 여부는 선거에서 국민심판에 맡겨 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임
 - 그럼에도 통민당이 구태여 헌법에 그 해석이 모호한 "군인의 정치개입 금지·문민정치" 규정을 두려는 것은
 -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대원칙인 평등권·참정권 보장을 간과하고 정략적 차원에서 한 측면만 과장거론하려는 것이고
 - 법체계상으로도 맞지 않으며
 - 정치선전·선동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소재도 활용하겠다는 비민주적인 발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음